

1. 개정 이유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징수 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며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재활용부과금 납부기한 전 징수 시,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징수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(안 제28조제5항)
- 나.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유예 또는 분할납부 시, 기한 및 방법과 징수 유예 취소사유, 변경사항 대상자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 내용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(안 제28조의2제1항, 제28조의3제2항, 제28조의4, 제35조의2제1항 및 제3항, 제48조제3항, 제48조의2제4호 및 제5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특이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3. 4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9조제6항”을 “법 제19조제9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3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제28조의3제2항 중 “법 제12조제4항·제19조제3항”을 “법 제12조제4항·제19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4(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·분할납부 등)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,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.

-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

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.

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,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, 징수유예한 재활용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.

1.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2.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3.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

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35조의2제1항 중 “법 제25조의8제2항”을 “법 제25조의8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25조의8제2항”을 “법 제25조의8제3항”으로 한다.

제48조제3항제3호 중 “법 제19조제3항”을 “법 제19조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 제19조제4항”을 “법 제19조제7항”으로 한다.

제48조의2제4호 중 “법 제19조제3항”을 “법 제19조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법 제19조제4항”을 “법 제19조제7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8조(재활용부과금의 산정· 부과 등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8조(재활용부과금의 산정· 부과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제28조의2(징수비용의 지급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. 1. 환경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(이하 “징수비율”이라 한다)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: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	제28조의2(징수비용의 지급) ① - ----- 법 제19조제9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1. ----- --- 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2. · 3. (생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략)

제28조의3(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) ① (생략)

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, 재활용부과금과 법 제12조제4항·제1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(이하 이 조에서 “부담금등”이라 한다)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해당 부담금등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③ (생략)

<신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8조의3(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법 제12조제4항·제19조제6항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8조의4(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·분할납부 등)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,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.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

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.

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,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 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, 징수유예한 재활용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.

1.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2.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
3.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35조의2(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·사용시설의 설치·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) ① 특별자치

제35조의2(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·사용시설의 설치·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) ① -----

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
군수·구청장은 법 제25조의8
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
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
·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
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하여
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
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
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개선
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
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
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
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
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.

제48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
위탁) ①·② (생략)

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
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
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.

1. ~ 2. (생략)

3.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납
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
가산금 부과

----- 법 제25조의8제3
항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법 제25조의8제3항-----

-----.
-----.

제48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
위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제19조제6항-----

4. <u>법 제19조제4항</u>에 따른 재 활 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 징수 4의2. ~ 20. (생략) ④·⑤ (생략) 제48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환경부장관(제48조제3항에 따 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 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 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 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4. <u>법 제19조제3항</u>에 따른 채납 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5. <u>법 제19조제4항</u>에 따른 재 활 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 징수에 관한 사무 6·7. (생략)	4. <u>법 제19조제7항</u>----- ----- -- 4의2. ~ 20. (현행과 같음) ④·⑤ (현행과 같음) 제48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법 제19조제6항</u>----- ----- ----- 5. <u>법 제19조제7항</u>----- ----- ----- 6·7.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자원재활용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386